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2호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비영리민간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4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이정희·강창석·김경수·김영록·이천수 의원(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비영리민간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예술사업
7.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창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